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63
------------	-------

발의연월일 : 2018. 4. 26.

발의자 : 위성곤 · 김현권 · 어기구  
정인화 · 이찬열 · 권칠승  
박정 · 홍문표 · 김철민  
정성호 · 이개호 · 신창현  
의원(12인)

### 제안이유

WTO 체제 출범, 한·미, 한·중,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 심화에 따른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산지별, 지역별 경쟁 등 국내 농산물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그만큼 수출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농산물 소비 패턴 다변화 등 농업생산 및 농산물 시장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최근 농업 정책 전반에 걸쳐 IC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화와 친환경 농업의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방식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 제도가 성숙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이 강조되는 등 국내 외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 요소를 고려하여 경쟁력이 유망한 지역특

화작목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작목산업 활성화는 이러한 농업의 새로운 발전·성장전략을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작목산업 육성에 필요한 생산·가공·판매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체계를 구축·지원할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함(안 제7조).

라.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과 기술이전·사업화촉진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수출용 품목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협회를 설립함(안 제15조).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지역특화작목의 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시설·장비 구축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특화작목위원회 등) ①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

## 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1.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부 시장·행정부지사 또는 농업기술원장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⑤ 제1항의 심의·조정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범위·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계획 및 추진

제8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보급 및 기술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년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천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천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천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

제10조(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 관련 시설 및 장비
2.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유망 지역특화작목 발굴
  2. 지역특화작목의 품종 개발
  3.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기술 개발
  4. 지역특화작목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5. 지역특화작목의 유통·가공기술 개발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등과 협력하여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촉진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관련 개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기술이전·사업화와 시범사업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특화작목의 수출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경  
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수출용 품목 개발

2. 지역특화작목의 수출에 필요한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관련 기술  
개발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결과의 사용·양도·대여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지역특화작목협회) ①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  
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 지역특화작목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